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65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2차]

1.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진출 역량은 갖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주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기간 : '26년 6월 ~ '27년 2월 (중장기형 과제는 최대 3년)**

* 반드시 사업기간 내 **과제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정산 가능**한 **과제 限**

□ **주요내용** : 대기업 등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

사업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비율
소비재	· 뷰티·푸드·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참여 중소기업당 최대 3천만원~2억원* 이내	총 과제비 60% 이내 *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 이내
산업재	·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부품·제품 *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재 등		

*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 p.6~p.10)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주관기업***의 역할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를 발굴 및 신청

*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주관기업 제한 요건 外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주관기업 제한 요건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기업**

◈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참여기업)**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상생협력재단)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을 칭함

*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 참여제한

· 소비재(K콘텐츠, 유통망), 산업재(판로개척)는 세부 유형별 연간 최대 2회 참여 가능

· 산업재(현지화), 소비재(협업형, 유통망-편의점)의 경우, 모든 유형 포함 연간 1회만 참여 가능(참여동의서 제출 시 기업에 반드시 타 과제 참여여부 확인)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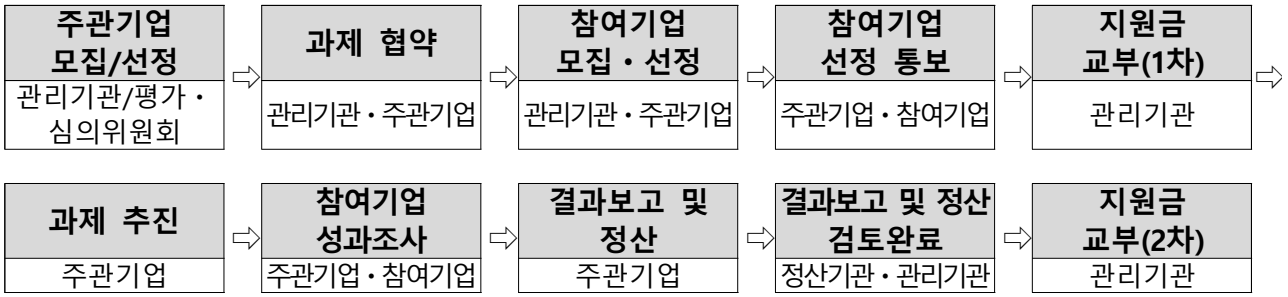

○ **(과제 협약)**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과제 운영계획서로 협약을 진행하며, 협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논의 必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최대 80%까지 先 지급 후, 잔여지원금 20%는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후 지급

*** 과제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과제기간 이외 집행 내역 불인정)**

4. 평가 및 선정

□ 평가·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관기업의 과제 운영능력, 달성 목표, 추진계획 등을 대면하여 평가

* 단, 주관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대참하여 발표 가능

** 평가항목 : 운영계획 타당성, 주관기업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가감점 등

○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선정 및 예산 조정

* 프로젝트형 등 중장기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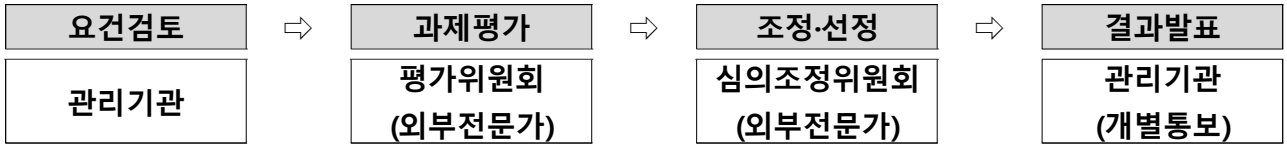

□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항목(100)		운영계획 타당성(40), 주관기업 운영능력(30) 지원규모 및 효과(30) 또는 성과목표(15), 참여기업역량평가(15)
가·감점 항목	가점(+3)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감점(-2)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하여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 과제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5-44호) 참고 바랍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모집공고 일정(안) * 진행사항에 따라 세부추진일정 변동 가능

신청기간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결과발표
'26. 6. 1.(월) ~ '26. 6. 26.(금) 18:00까지	7월 1주(예정)	7월 2주(예정)	7월 3주(예정)

* 평가위원회 내 주관기업 必 참석, 신청 기업에 한하여 일정 안내 예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경로 : 상생누리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공지사항)

* 상생누리 플랫폼 : www.winwinnuri.or.kr

※ 신청은 6.26.(금) 18:00까지이며,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p.13~)의 제출서류 양식 참고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공통)	1	·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붙임1] 직인 날인 스캔본 13~22p**
선택 (해당시)	2	·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붙임2]**
	3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자료 *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 전년도 언론 홍보자료 및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확인서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4	·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기업별) * MOU, LOI, 공식 언론보도 등	**[붙임3] 산업재(현지화)**

□ 관련 문의

관리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 (소비재) 02-368-8754, 755 · (산업재) 02-368-8732, 786	gw@win-win.or.kr

6. 유의사항 (확인 必)

○ 과제 신청 시 예산계획은 과제비 편성기준(참고 1)과 별도 산출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전년도 사업예산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함

○ **선정·협약 이후라도 동일 사업내용(전시회, 행사 등)에 대해 타 정부지원과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국고 환수)**

○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의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

○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사후 환급 가능 금액(예외. 면세사업자) 및 공제받을 금액 또는 관세 등과 같은 수수료는 정부지원금 불인정(단, 은행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최종 승인시 인정 가능)

○ 주관기업이 과제를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수행기관 정보와 위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은 사후 1년간 관리기관의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및 성과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공고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

· 관련 법률 및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행정규칙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5-44호)

7. 유형별 세부내용

1 소비재 분야

❶ K콘텐츠

○ 주관기업에서 보유한 행사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아티스트 IP 활용 역량 등과 연계하여, 中企 제품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등 지원

*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 및 한류 콘텐츠 등 활용 → '문화-산업' 융합

- (행사) 해외 K팝 콘서트, 전시회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판촉전을 진행하고,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기획전, 수출상담회 등 운영

* 한류행사 연계 한류스타 이벤트(예 : 팬미팅, 제품 시연회 등) 및 IP 활용 영상·포스터 등 제작, 공식 SNS 계정(주관기업 등) 홍보

- (콘텐츠)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등 연계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온라인플랫폼 연계 기획전, 팝업 등 지원

❷ 유통망

○ 주관기업 보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 해외기업 제품 입점, 인증, 마케팅 등 지원

- (B2C) 현지 판매 가능성이 높은 우수 中企 제품 발굴(MD)을 통해 온·오프라인 입점·직접판매, 팝업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 (B2B) 주관기업, 유관기관이 보유한 해외 바이어 풀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수출상담 및 공동수주회 지원

- (인증·마케팅) 현지 입점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제품 인증 취득(예 : 할랄 등)과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편의점) 편의점과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제품 개발, 라벨링, 인증, 물류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점·유통까지 연계

< 유통망 – 편의점 유형 단계별 지원 >

제품 준비	→	현지화	→	판로 확대
제품 개발 또는 개선		라벨링, 포장, 물류, 인증 취득 등		해외 편의점 및 글로벌 유통매장 내 입점

* 단계별 지원내용 포함 필수 → 미포함 시, 일반 유통망 과제로 인정

❸ 주관기업 협업형

○ 유통·플랫폼·방송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협업형 과제(최소 2곳 이상)

- (방송사) 콘텐츠 및 행사 기획·제작하여 해외 방송채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인지도 확보 지원

- (유통사) 자사가 보유한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하여 현지 시장 및 소비자 분석, 현지화 등 지원

- (플랫폼) 특정 분야(뷰티, 패션 등)에 특화된 시장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

<table>
<tr><th>구분</th><th>참여기업당 지원규모</th><th>지원비율 및 지원내용</th></tr>
<tr><td>K-콘텐츠</td><td>■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td><td rowspan="2">■ 지원비율
- 총 과제비 60% 이내 지원
* 주관기업이 민간부담금에서 상생협력 기금 출연·활용 시, 70% 이내 지원</td></tr>
<tr><td>협업형</td><td>■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td></tr>
<tr><td>유통망</td><td>■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편의점 패키지 지원 해당 시,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주관기업이 직매입하는 등의 간접수출 해당 시 참여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td><td>■ 지원비율
- 일반 과제의 경우, 상기 동일
- (간접수출) 총 과제비 50% 이내 지원
* 주관기업이 민간부담금에서 상생협력 기금(민간) 활용 시, 60% 이내

■ 지원내용
- 공간 임차료, 장치비, 제품운송, 수출상담, 한류행사, 홍보마케팅, 콘텐츠제작, 스타마케팅 제반비용 등</td></tr>
</table>

※ 유형별 지원내용(안) * 주관기업 협업형 과제의 경우, 하기 지원내용 복합

구 분			주요내용
K 콘텐츠	행사	B2C 온·오프	· 한류행사(K팝 콘서트 등)를 활용한 오프라인 판촉전 및 팝업스토어,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 지원
		B2B 수출상담	·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콘텐츠	콘텐츠 제작	· 한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 홍보 * (PPL) 브랜디드콘텐츠(드라마, 예능 등) 內 中企 제품 노출 * (MCN) 인플루언서 활용 중소기업 제품 시연 및 소개
		B2C 온·오프	·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內 부스관 조성 必 및 팝업스토어,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 지원
		B2B 수출상담	·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홍보	마케팅 지원	·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등과 중소기업 제품 매칭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 (이벤트)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 및 경품 증정 이벤트, 팬 미팅(예 : 하이터치), 각종 공연(예 : 댄스) 등 * (IP 활용 제작)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등의 IP를 활용한 영상 및 포스터, 포토카드, 굿즈 등 제작 * (온라인 홍보) 공식 SNS 계정(주관기업, 인플루언서 등) 및 온라인플랫폼 배너 등
유통망	온·오프라인	B2C 온·오프	· 주관기업 보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및 오프라인 유통 매장 입점·판매, 팝업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B2B 수출상담	·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공동수주회 개최 * 주관기업 보유 바이어 풀 활용
	기타	인증·마케팅	· 현지 온·오프라인 입점 및 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대상 인증(예 : 할랄 등) 취득 지원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홍보
	편 의 점		· (제품 준비) 중소기업 제품 개선 또는 공동 개발 · (현지화) 제품 라벨링, 인증 취득, 물류 지원 · (판로확대) 주관기업 온·오프라인 및 글로벌 해외 유통사 내 입점 지원

2 산업재 분야

❶ 현지화

○ **(현지화)** 주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시범 적용 및 해외수요처 요구사항(규격, 스펙 등) 대응을 위한 해외 인증, 컨설팅 등 지원

구분	주요내용
제품현지화	· 현지 규격·인증 취득 지원, 제품·솔루션 현지화를 위한 기술 컨설팅 등
해외실증(PoC)	· 중소기업 제품 현장 시범설치·운영 및 현장 시연을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후속사업 연계 지원
법인설립	·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인·허가 및 법률·회계자문 행정 지원, 현지 법인(공장) 운영 및 생산현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 **(프로젝트형)** 대·중견기업 등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등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과제 지원(최대 3년)

*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나, 진출국가 및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별도 협의 가능

- '기획-진출-판로' 총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수립부터 설비구축에 필요한 제품·기술 현지화, 수요처 발굴,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국내 →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프로젝트형 과제 주요내용 예시>

기획 (1년차)	→	진출 (2~3년차)	→	판로확대 (3년차)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인·허가, 제품 인증, 제품·기술 현지화 및 수주 교섭 활동 등 지원		본격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실증 및 현지법인(공장) 설립 구축 지원, 시설 및 설비 운반·설치 등 지원		글로벌 수요처 확대를 위한 공동 A/S센터 운영 및 기술 품질·생산성 향상 컨설팅, 바이어 구축, 마케팅 등 지원

* 중장기 계획수립 후 연차별 수행하며, 중간보고서 제출 및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수행여부 심의·의결하며 사업기간과 지원규모 등 지원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방산 분야) 국내 방산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형 과제 추진 시에도 지원

* 참여 중소기업 1개 사 당 연간 1억원 이내, 과제별 최대 15억원(3년 合) 이내 지원

- (對美 프로젝트) 프로젝트형 과제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지원 확대

* 참여 중소기업 1개 사 당 연간 2억원 이내, 과제별 최대 20억원(3년 合) 이내 지원

❷ 판로개척

○ 대기업 등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및 해외 영업망·현지 네트워크 연계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

구분	주요내용
산업전시회	· 주관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전시회 공동 참여(부스인부스 형태 등) 및 바이어 연계 지원
수출상담회	· 주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영업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지원
기술로드쇼	· 해외정부 등에 중소기업 기술소개 및 구매상담, 네트워킹 지원
플랫폼활용	· 주관기업의 플랫폼 활용 글로벌 서비스 구축 및 입점 지원
홍보마케팅	· 주관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table>
<tr><th>구분</th><th>참여 중소기업당 지원규모</th><th>지원비율 및 지원내용</th></tr>
<tr><td>판로개척</td><td>■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방산 분야, 참여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td><td rowspan="2">■ 지원비율
- 총 과제비 60% 이내 지원
* 주관기업이 민간부담금에서 상생협력기금 출연·활용 시, 7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행사(전시·상담회)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 지급수수료(통역 등), 제품현지화비(시제품제작재료비 등), 홍보·마케팅비(안내책자·홍보영상 등) 수출지원을 위한 과제 수행 제반 비용
* 해외실증에 소요되는 제품현지화비(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구입 비용)는 정부지원금 내 50%까지만 인정
* 정부지원금으로 기자재 구입·자산 취득 제한</td></tr>
<tr><td>현지화</td><td>※ 현지화 참여 중소기업은 사전 발굴·선정하여, 참여기업 동의서(양식) 및 추진내용(MOU / LOI, 보도자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현지화)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프로젝트형)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3년간,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이내로 과제 구성 가능
- 참여기업당 한도는 연간 1억원 * 3년 = 최대 3억원 이내
*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기업당 2억원, 과제당 20억원 한도로 확대</td></tr>
</table>

【참고】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계상기준 등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1. 공통사항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은 40% 이상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업(일부 협력·참여기업 부담 가능)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주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정부지원금 편성·지원 가능

* 상생협력기금은 민간부담금 내 현금사업비로 편성 가능

* 단, 소비재(유통망-간접수출)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 10% 하향 조정 (정부지원금 50% 이내 구성하며,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60% 이내 구성)

2. 사업유형별 지원비목

○ 사업유형별 지원기업(제품)당 지원 한도 내 아래 지원비목별 산정 내용 및 계상 기준 참조

○ 주요 지원항목외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과제 추진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

- 참여기업당 지원한도는 소비재(K콘텐츠·유통망)·산업재(판로개척) 3천만원, 산업재(현지화) 5천만원, 소비재(협업형)·산업재(프로젝트)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비재(유통망)의 경우, 간접수출에 해당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총 과제비 최대 50% 이내)

* 산업재 현지화 프로젝트형의 경우, 과제별 3년간 최대 15억원 한도 지원 다만,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참여기업 당 2억원, 과제별 3년간 최대 20억원 한도

- 정책방향 지원 및 전략적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한도초과 및 별도항목 지원 가능

3. 지원비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지원비목	산정내용 및 기준
운영비	ㅇ 운영경비 : 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운반보관료	ㅇ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
지급수수료	ㅇ 국내외 컨퍼런스, 대회, 회의 등의 참가비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현지인력 채용(업체를 통한 계약이아닌 직접계약건만 가능)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1회 기준) ㅇ 바이어 초청 관련 비용
홍보·마케팅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연예인, 인플루언서(왕홍 포함) 등 스타 활용 해외마케팅을 위한 출연료, 콘텐츠 활용권리(초상권, 프로그램IP) 등
전문가활용비	ㅇ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수당 등
대행수수료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등) 대행수수료 ***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10% 이내 편성 가능**
임차료	ㅇ 상담회, 전시 혹은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설·기자재·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구매비용 집행불가)
제품현지화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약·재료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사양 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포장·디자인·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50% 이내 편성 가능**
설치용역비	ㅇ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 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ㅇ 시제품 및 현지화 완성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용역수수료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인력 활용 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함(1회 기준)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 용역업체를 통한 거래 시 집행가능
영상제작비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카메라 장비, 차량) 등
온/오프라인 입점비	ㅇ (온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제품 등록, 전용관·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오프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해 백화점, 마트 내 팝업스토어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발생하는 운영 경비
행사비	ㅇ 행사비 : 간담회, 설명회·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비용 * 회의비(사업추진비)의 경우 업체당 최대 5만원 한도 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함 ㅇ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지원비목 편성 가능 ㅇ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 및 지침에 따름

붙임 1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필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주관기업용)

사업 유형	소비재	☐ K콘텐츠 ☐ 유통망 ☐ 협업형			
	산업재	☐ 판로개척 ☐ 현지화 (☐ 프로젝트/ 최대 3년))			
과 제 명					
주 관 기 업 명		과 제 책 임 자 (성명, 직위포함)			
(사 업 자 번 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과 제 기 간	2026. . . ~ 2026. . .* *'26.12월 내 종료*				
중장기 과제 여부	☐ 2차년도 이상의 중장기 과제만 체크 ○ 1차년도 : 20 . . . ~ 20 . . .(개월) ○ 2차년도 : 20 . . . ~ 20 . . .(개월) ○ 3차년도 : 20 . . . ~ 20 . . .(개월)				
과 제 개 요	지원기업 수 (개사)		진출국가 (국가, 도시)		
과 제 내 용	*(작성방법)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어떤 자원)를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간략히 기술(2-3줄 이내)* ○				

과 제 비	과제비총액 (A=B+C)	원(100%)				
	정부지원금 (B)	원(%) **보조율 60%이내(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70% 이내)* **유통망 : 간접수출시 보조율 50%이내(상생기금 활용 시, 60%이내)*				
	민간부담금 (C) (단위: 원)	주관기업 등			참여 중소기업 (4.필요시)	소계 (1+2+3+4) *40% 이상
		현금		현물 (3.자체)		
		(1.자체)	(2.상생협력기금)			

협력 대기업 또는 수행기관 등 참여여부	*참여할경우, 기업(기관)명 기재*	타 정부 수출지원 사업 중복 신청·수혜 여부	☐ 신청, ☐ 신청이력 없음 ☐ 수혜, ☐ 수혜이력 없음

상기와 같이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과제 운영계획서

□ 일반현황 *※ 기울임 글씨는 작성방법 및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계획 내용(수정·삭제)을 기재해주세요.*

<table>
<tr><td>주관기업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소 재 지
(본사 주소)</td><td colspan="4"></td></tr>
<tr><td>설립연도</td><td colspan="2"></td><td>주생산품</td><td></td></tr>
<tr><td>종업원 수</td><td colspan="2"></td><td>매 출 액('25년)
(단위 : 천원)</td><td></td></tr>
<tr><td>과제추진
부서현황</td><td colspan="4">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업무 등)</td></tr>
<tr><td rowspan="2">해외진출
현황</td><td>진출국가</td><td colspan="3"></td></tr>
<tr><td>진출형태</td><td colspan="3">해외지사, 사무소, 합작법인 등 해외진출 형태 기재</td></tr>
<tr><td rowspan="2">주관기업
실무 담당자</td><td>부서명</td><td colspan="2"></td><td>담당자
(성명, 직위)</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사무실/휴대전화 연락처, e-mail 등</td></tr>
<tr><td rowspan="2">협력 대기업
및 수행기관</td><td>기업(기관)명</td><td colspan="2"></td><td>담당자
(성명, 직위)</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사무실/휴대전화 연락처, e-mail 등</td></tr>
</table>

□ 주관기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실적*(최근 3개년, '23~'2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o 20**년, 과제명* *– 과제기간 :* *– 지원기업 수 :* *– 총 사업비 : 00천원 (정부지원금 00천원, 민간부담금 00천원)* *– 주요성과(추진내용별 목표대비 달성률 등)* *o ...*
타부처·기관 자체 추진사업	*o 20**년, 지원부처(기관)명, 과제명* *– 과제기간 :* *– 지원기업 수 :* *– 총 사업비 : 00천원 (정부-지원금 00천원, 민간부담금 00천원)* *– 주요성과(추진내용별 목표대비 달성률 등)* *o ...*

□ 과제요약

과제명	과제 신청현황 (금액단위 : 원)						
	주관기업명	진출국가	지원기업수	과제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과제비

□ 과제내용

□ 개요

○ (목적)

○ (내용요약)

○ 추진계획

- **(주관기업 역할)**
- **(중소기업 지원내용)**

□ 과제비 구성 : 총 ~원 소요

○ **정부지원금** : ~원(00%), **민간부담금** : ~원(현금/현물, 00%)

구분	주요 지원내역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 과제목표 ** 샘플작성입니다.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실제 목표를 기재해 주세요*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
주요성과 (정량)	*판매액· 판매건수*	*300,000,000원 1,000건*	*추가 판매액· 추가 판매건수*	*500,000,000원 2,000건*
	계약액· 계약건수	*30,000,000원 1건*	*수출 상담액· 수출 상담건수*	*원 건*
	계약 추진액· 계약 추진건수	*원 건*	*신규수출국 발생 중소기업*	*개사*
	수출국가 증가율	*%*	*해외거래처 증가율*	*%*
	콘텐츠 시청자수 및 시청률	*12만명, 5%*	*라이브커머스 시청자수*	*동시접속자 700,000명*
	유튜브 광고 조회수	*(12/2기준)누적조회수548,203회*	*게시물 조회수*	*(00/00기준)누적조회수20,000,000회*

	추진내용	목표
과제수행 세부계획	*참여기업 제품 PPL*	*레벨1 10개 레벨2 10개*
	온라인몰 입점	*20개사 40개 제품 판매액 1억*
	라이브커머스	*판매액 2억*
	유튜브 광고집행	*누적 조회수 30만 달성*
	신규국가 중소기업 신규공장 신설	*어느대륙 어느나라 어떤공장 어떤규모 생산가능시설 신축*
	⋮	⋮

□ 과제 세부내용 *※ 개조식 기술 필요*

<table>
<tr><td>과제목적</td><td></td></tr>
<tr><td>주관기업의
역할</td><td>※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는 달리,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주관기업의 역할을 할 것인지 기술 (기존과제와의 차별점/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중소기업이 단독 진행하는 것과 달리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td></tr>
<tr><td>추진계획</td><td>o (동반진출 추진내용)
추진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이미지 삽입 가능, 최소 2p이상 작성

o (단계별 지원계획)
<table><tr><th>단계</th><th>내용</th></tr><tr><td>사전준비단계</td><td>참여기업 교육/컨설팅, 사업설명회, 사전간담회, 현지화 개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사항 기재</td></tr><tr><td>과제추진단계</td><td>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Test-bed 구축, 시범사업, 수출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참여기업 지원사항 기재</td></tr><tr><td>사후지원단계</td><td>과제 추진 이후 추가 지원사항 및 참여기업 관리활동 기재</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o (추진일정 : 아래표를 중심으로 기술)
<table><tr><th>과제 추진 내용(예시)</th><th>추진일정</th></tr><tr><td>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② 사전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③ 참여기업 사전간담회
④ 현지 바이어 초청 상담회
⑤ 사후 온라인 판촉전 추진
.
.</td><td>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td></tr></table></td></tr>
<tr><td>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방안</td><td>o (참여기업 모집방안)
주관기업 홈페이지 상 모집공고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관기업 단독 모집, 주관기업 및 관리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 모집 등 구체적 모집방안 기재

o (참여기업 모집기준)
주요 품목, 참여기업별 부담금, 진출국가 수출 여부 등

o (참여기업 모집일정) 20 . . . ~ 20 . . .

o (참여기업 선정방안)
주관기업 자체 평가에 따른 선정,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면평가 선정 등 선정주체 및 평가방식 기재

※ 산업재(현지화, 중장기 프로젝트)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의 역량 및 역할에 관하여 기재</td></tr>
<tr><td>달성목표 및 예상성과</td><td>o (정량적)
총 지원금 투입 대비 00배 수출달성, 참여기업 전체 수출 5백만불 달성, 참여기업 20개사 수출계약 X억원 체결 , 참여기업 15개사 해외 온라인몰 입점 등 구체적인 목표 기재

o (정성적)
참여기업 현지 시장조사 기회 제공, 참여기업 현지 바이어 소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현지 소비자 대상 제품 홍보기회 제공 등 정성적인 목표 기재

o (예상성과)
상담액, 수출계약 건수 및 수출계약액, 판매액, 해외 온라인몰 입점 건수 등 정량적 목표에 따른 예상 성과 기재</td></tr>
</table>

□ 예산계획 ** 기울임 글씨는 샘플작성입니다.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실제 예산을 기재해 주세요,*

과제비 요청내역						
비 목	산 출 근 거 (단위 : USD, 원)			금액(원)		비고 (현금, 현물내역)
	세부내용	단가	수량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임차료	전시장 부스 임차	450USD * KOTRA 무역관별 기준단가(두바이) 적용 50% 이내	20개사	2,000,000	2,000,000	단가x수량x50% (행사장 집기류 포함)
설치 용역비	전시장 부스 설치비	250USD *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 이내	20개사	2,000,000	2,000,000	
운반 보관료	판촉전 제품 운송	200,000원 * 1CBM당 단가 적용	10개사	2,000,000	-	편도 운송보관료 100% 지원 (반송운송료 미포함)
행사비	참여기업 간담회	50,000원	10개사, 2회	1,000,000	-	수출상담일, 현장판촉전 당일
운영비	운영경비(소모품비)	-	-	600,000	400,000	행사 소모품 구매
	도서인쇄비	5,000원	2,000부	6,000,000	4,000,000	공동 팜플렛 제작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300,000원	2인	600,000	-	수출 인허가 전문가
.	.	.	.	.	.	.
합 계						1USD=1,200원

※ 위 요청금액은 [참고. 12p 과제비 편성기준]에 따라 기재. 단, 주관기업(협력·수행기관 포함) 및 참여기업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과제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임차비, 운반보관료, 인쇄비 등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견적서, 사업추진 품의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불인정)

※ 산출근거 단위는 진출 국가 화폐단위에 따라 USD, CNY, EUR, JPY, KRW 등 사용 가능하나 최종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

※ 다차년도 과제(2·3차년도)의 경우 연차별 예산 계획 구분하여 작성 필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표 추가 작성

※ 참여기업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기업별 부담금액, 해당 비용으로 집행계획 별도 추가 작성

20ㅇㅇ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					
출연목적	참여기업 부스설치, 항공비, 현지 시장조사 지원				
출연시기	과제협약 후 1개월 이내(별도 시기 지정 희망시 사유 상세 기재), 기존출연 재원 활용 희망시 기존재원 출연 시기 작성)				
출연금액	금 30,000,000원				
구 분	산 출 근 거 (단위 : USD, 원)			금액(원)	비고
	내역	단가	수량		
설치용역비	수출상담장 제품소개부스 설치	1,500USD	10개	10,000,000	인터넷 회선임차, 설치 포함
국외여비	참여기업 항공비	500,000원	20명	10,000,000	왕복 항공권
임차료	시장조사를 위한 단체버스 임차	420USD	3일	10,000,000	-
.	.	.	.	.	.
.	.	.	.	.	.
.	.	.	.	.	.
합 계					1USD=1,200원

(기타) 필수 증빙자료

※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목차마다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제출

1) 예산산출 증빙자료
   * 18p 내 기재한 비목별 예산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구분하여 제출(민간, 정부)
   * 자유 양식으로 제출
2) 주관기업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내 확인 가능

□ 예산산출 증빙자료

별도 양식 없음

□ 사업자등록증

별도 양식 없음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참여기업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당사는 금품수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과제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필요한 신청·지원기업(귀하)과 관련한 법인·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평가 및 관리 ▸동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성과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할 항목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법인·개인·신용정보, 상품정보, 행정정보, 인증정보 수집·이용 ·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홈페이지, 수출액, 매출액, 자본금, 본사주소, 공장주소, 주업종, 해외영업 전담인력 사항, 휴·폐업 사항, 특정사업(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관련 사항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상품정보 : 수출관련 인·허가 취득 현황, 인증규격, 인증품목·번호, 통관 관련 사항(HS코드 등), 신청제품생산정보(생산방식 및 유통판권 보유 등), 상품 소비자 가격, 공급가격 · 행정·인증정보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및 R&D 집약기업 관련 사항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이력관리 및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참여이력 및 수출정보 활용 · 참여이력 : 유관사업의 참여 실적 관련 정보(사업명, 참여년도, 지원기관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 수출정보 :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일자리평가 항목 조회를 위한 기업 식별정보 수집·이용 ·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등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보유·이용 기간	위 법인·개인·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신용·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수출실적조회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일자리평가기관/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조회・제공받는 자의 목적	▸법인(개인) 신용평가 정보 조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항목 조회 : 중소기업연구원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조회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 지원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획득을 위한 추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회・제공할 법인・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제공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일자리평가를 위한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조회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관련 사항, 우리사주조합 운영 관련 사항, 스톡옵션 운영 관련 사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등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천을 위한 지원이력정보 제공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제공받는 자의 법인・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 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신용・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 업 체 명 : (인)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업무 담당자 성 명 (인)

붙임 2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해당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사 업 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 제 명 (과제기간)	(2026.00.00～2026.00.00)		
주관기업명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성명, 직위)	

상기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당사의 의무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것이며, 본 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으로서 주관기업에 준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수행기관 :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관리하거나,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기업

첨부서류 1. 수행기관 일반 현황 및 실적 1부.
2.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2026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수행기관 일반 현황 및 실적

1. 사업수행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 재 지			
설립년월	년 월		
종업원 수		매 출 액 (단위 : 천원)	*직전년도 매출액*
과제추진 부서현황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업무)*		
총괄 책임자명		전 화	*유선/무선*
		e-mail	

주요연혁

확인사항

수행기관 확인사항		예	아니오
①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관기업과의 특수관계인 여부		
②	최근 2년간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여부		
③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신청·수령 여부		
④	과제비(정부지원금,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관리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⑤	교부받은 과제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구분하여 회계 처리		

※ ①~③문항이 '예' 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기관의 주요 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 기관의 지분만을 기재
3. 자체수행사업인 경우 발주처에 자체로 표기
4. 비고에는 사업의 진행상태를 나타내며, 완료, 진행중, 진행예정으로 표기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인</td><td>업 체 명(상호)</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영 업 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사 업 자 번 호</td><td colspan="2"></td><td>제 출 처</td><td></td></tr>
<tr><td>증 명 서 용 도</td><td colspan="4"></td></tr>
<tr><td>사 업 의 종 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용역수행
/
실적내용</td><td>계 약 명</td><td colspan="4"></td></tr>
<tr><td>주요 수행내용</td><td colspan="4"></td></tr>
<tr><td>계약번호</td><td>계약일자</td><td>계약기간</td><td>금 액</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증 명 서
발급기관</td><td colspan="5">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td></tr>
<tr><td colspan="5">기 관 명 : (인)</td></tr>
<tr><td colspan="5">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td></tr>
<tr><td colspan="3">발급부서 :</td><td colspan="2">담 당 자 : (인)</td></tr>
</table>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해당용역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3. 위 자료는 주관기업의 과제 평가에 활용
4.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 :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붙임 3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산업재, 현지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동의서

사 업 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 제 명 (과제협약기간)	(0000.00.00～0000.00.00)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성명, 직위)	

상기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상 당사의 의무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것이며, 본 과제에 대해 참여기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참여기업 :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동반진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첨부서류 1. 참여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표 1부.
2.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여기업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표

1. 사업 참여기업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 재 지			
설립년월	년 월		
종업원 수		매 출 액 (단위 : 천원)	*직전년도 매출액*
과제추진 부서현황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업무)*		
총괄 책임자 (성함, 직급)		전 화	*유선/무선*
		e-mail	

주요 기술 및 실적

○ 주요 사업 수행 인력 및 보유 기술 관련 등 참여기업 역량 명시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작성

○ 프로젝트 간략 소개 및 본 프로젝트에서 참여중소기업의 역할 등 기재

확인사항

참여기업 확인사항		예	아니오
①	법인세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주관기업과의 특수관계인 여부		
②	최근 2년간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여부		
③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신청·수령 여부		

※ ①~③문항이 '예'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